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문장길 의원 외 18명

나. 의안번호: 제1057호

다. 발의일자: 2019. 10. 15

라. 회부일자: 2019. 10. 22

2. 주 문

-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업종에 숙박업소가 포함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3. 제 안 사 유

- 지난 2009년,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모든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모든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제공을 허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 완화에 해당하고, 오히려 1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 여가 문화의 변화에 따른 숙박업소의 증가 추세 등에 비추어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시설에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기타사항 : 없음

5. 이 송 처

- 가.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 나. 정 부: 환경부

6.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건의안은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1) 관련 법규 검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축법」”이라 함)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업종 등의 사업자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축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에서는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의 규모,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에서는 대상사업장별로 사용억제, 제작·배포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 2009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에 따라 「자축법」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 및 준수사항)를

개정하여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기 존	개 정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p>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 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4.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숙박업(객실이 7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u>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u>목욕장업</u></p> <p>5. ~ 8.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 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u>목욕장업</u></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2) 검토의견

- 최근 1회용품의 주요 원료인 플라스틱은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전 지구적인 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시민·업계 등 모든 주체의 공동 노력과 실천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임.
-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외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발생원 감량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됨에 따라 지난 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지난 해 9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회용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숙박업소에 대한 계획은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반면, 유럽 연합은 2022년부터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의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¹⁾, 미국, 영국, 대만 등지에서도 1회용품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²⁾한 바 있음.

-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는 면도기, 칫솔 등의 1회용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목욕장업이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서울시의 숙박업소 개소가 목욕장업에 비해 3배³⁾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확산 측면에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관계부처 합동, '19년)

2)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서울시, '18년)

3) '18년말 기준 서울시내 영업 중인 목욕장업은 947개소, 숙박업소는 3,083개소임.

[참고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시 1회 이용 인원 1,000명 이상 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 333㎡ 이상 접객업	50	100	200
나) 평시 1회 이용 인원 300~1,000명 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 100~333㎡ 미만 접객업	30	50	100
다) 평시 1회 이용 인원 100~300명 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 33~100㎡ 미만 접객업	10	30	50
라) 평시 1회 이용 인원 100명 미만 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 33㎡ 미만 접객업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증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물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